

부산직할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남구에 기탁한 이웃돕기성금 및 부산직할시에서 지원된 이웃돕기성금을 불우한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이웃돕기성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이웃돕기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이웃돕기성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기탁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그 의사에 따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2. 불우보훈대상자
3. 재해이재민
4. 가두직업청소년 및 자활단체
5. 사회복지시설수용자
6. 취약지 근무 경찰, 군인
7.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민 또는 단체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이웃돕기 기금계좌를 설치 관리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기금의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6조(지원기준) 기금은 수혜자의 생활상태나 사정등을 참작하여 지원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8조(결산보고) 당해년도 기금의 수지에 관한 결산은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